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개강좌 운영지침

제정 2015. 11. 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공개강좌규정에 의거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운영하는 공개강좌의 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지침은 다음 강좌나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한다.

① 본교 공개강좌규정에 의거 총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공개강좌

② 본교 공개강좌규정에 의거 개설 신고를 한 3주 이하의 단기 공개강좌

③ 본 대학과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이해각서에 입각하여 개설되는 기타 교육프로그램

제3조(조직)

① 학장은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개강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농업생명과학대학 공개강좌 운영을 위해 학장은 다음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공개강좌 각 프로그램 별 주임교수 각 1인
2. 업무주관 직원
3. 공개강좌 운영 실무요원 약간 명

③ 주임교수는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4조(공개강좌운영위원회)

①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개강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전체 9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교육연수원장 및 공개강좌별 주임교수, 행정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겸임한다.
2. 임명직 위원은 학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회의는 학장,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개강좌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학부(과)장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 할 수 있다.

1. 공개강좌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관운영경비사업비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침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개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편성 및 운용) 학장은 공개강좌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법인회계에 편입・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관운영경비사업비 징수) 모든 공개강좌는 개설기관(대학)의 시설을 사용하고 업무지원을 제공받으므로 개설기관(대학)에서 정한 기관운영경비사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강좌의 운영) 모든 공개강좌는 주임교수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운영한다.

제8조(수료증 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기간에 따라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주임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증의 명의를 달리 할 수 있다.

부칙(제103호, 2015.11.6.)

① 이 운영지침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운영지침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공개강좌운영규정 및 농업생명과학대학공개강좌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본 운영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개강좌에 대한 기관운영경비사업비 징수는 재개설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